

대기오염물질 관리 지침서

진 테 크 주 식 회 사

1. 목적 (Purpose)

본 지침은 진테크(주)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을 적법하고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한 규정과 절차를 수립함으로써, 대기환경보전법 등 관련 자국 법령 및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쾌적한 대기 환경을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 범위 (Scope)

본 지침은 회사의 전 사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시설 및 방지 시설의 운영, 유지보수, 모니터링 관리 업무에 적용한다.

3. 책임과 권한 (Responsibilities)

◎ 환경관리 책임자 (또는 공장장):

대기오염물질 관리 체계 총괄 승인 및 개선 조치 지휘.

◎ 환경 담당 부서 (또는 담당자):

* 대기오염 방지시설의 일상 점검 및 운영 상태 모니터링.

→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가측정 계획 수립 및 결과 기록·보존.

→ 법적 기준 초과 시 비상 대응 및 보고.

4. 운영 및 관리 절차 (Operating Procedures)

4.1 배출 및 방지시설의 운전

모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 시, 해당 방지시설(예: 흡착탑, 여과집진시설 등)을 동시에 또는 사전에 가동하여야 한다.

방지시설의 설계 인자(압력 손실, 풍량, 약품 투입량 등)는 적정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상시 관리한다.

4.2 일상 점검 및 유지보수

환경 담당자는 매일/매주 방지시설의 외관 상태, 모터 구동 여부, 차압 상태 등을 점검하고 [대기오염 방지시설 점검일지]에 기록한다.

소모품(활성탄, 필터 등)의 교체 주기를 준수하며, 교체 내역을 기록하여 최소 3년간 보관한다.

4.3 자가측정 및 모니터링

관련 법령(대기환경보전법 등)이 정한 주기(예: 반기 1회 또는 분기 1회 등)에 따라 공인 분석기관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를 측정한다.

측정 결과는 법적 배출허용기준의 8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을 자체 관리 기준으로 삼는다.

4.4 비상시 조치 절차

방지시설 고장 또는 배출허용기준 초과 우려 발생 시, 즉시 배출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거나 부하를 낮춘다.

환경관리 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고, 원인 파악 및 정비 후 재가동한다. 필요한 경우 관할 지자체에 고장 신고서를 제출한다.

5. 기록 관리 (Retention of Records)

본 지침과 관련된 다음의 기록물은 환경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최소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결과 보고서

방지시설 운영 및 점검 일지

소모품(필터, 활성탄 등) 교체 이력 및 폐기물 처리 확인서